#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4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진선미·신영대·윤종군

임오경 · 이학영 · 남인순

박성준 · 임호선 · 서영교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책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미흡한 상황임.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임.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 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 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에 대한 자체평 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 아.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 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 관을 포함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 다)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마.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 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 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8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도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역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도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시 · 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역추진계획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회적가치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 원회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 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연 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 ③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실시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 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 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공공기관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수립주기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대상기간과 두 번째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대상기간은 3년으로 한다.